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 』

≪ 檢 討 報 告 書 ≫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

-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이 2005.3.24 개정되어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생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으며,
- 본 조례 시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교 관계규정 삭제(안제1조)
- 추천자에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확대(안제4조)
- 불명확한 지급정지 사유 삭제(안제9조제1항 제1호, 제3호)

□ 검토의견

- 안제1조에서 중학교 관계규정을 삭제함은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, 불명확한 지급 정지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에서 유공자 장학생, 우등생, 특기생으로 규정되어 있고, 제5조(선정)에서 심사기준으로 서훈, 표창, 사망 또는 부상, 기타 유공을 들고 있으며,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형편의 반영이 미미할 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,
- 현행 제1조의 조문중 “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아울러 제3조 제1항도 “장학금의 지급은 남·녀 새마을지도자”에서 “장학금의 지급은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·녀 새마을지도자”로 개정하여 봉사기간이 비교적 긴 새마을지도자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,
- 안제4조의 장학생의 추천자 중에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부회장을 추가함은 현재 새마을문고 회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0

보고자 : 김 찬 재

【 참고자료 】

- 관련 법조문
- 수정의견

관련 법조문

□ 교육기본법

제8조(의무교육)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
(개정2005.3.24)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23조(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)①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1999.8.7, 2001.10.20, 2005.9.29>

4.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
부 척 <제17390호, 2001.10.20>

제2조(특별시, 광역시, 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)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.

수정의견